

2024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주요내용

- 내실있는 시민참여 제안사업 발굴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및 정비
- 예산 전(全) 과정 시민 참여 확대
- 참여예산 역량강화 및 이해증진



광주광역시

예산담당관실

□ 2024년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구 분	주 요 내 용
내 실 있 는 제 안 사 업 발 굴	▶ 시민참여예산 내실있는 제안사업 발굴 추진 • 공모 : 4개 사업유형, 예산규모 125억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접수) • 공모 외 : 온라인플랫폼<광주온>접수로 참여 방법 다양화 (시민참여 부서 협업) ▶ 광역단위 참여예산에 걸맞는 규모있고 의미있는 정책사업 발굴 ▶ 기타 제안사업 발굴 활성화 방안 • 안전사고 예방 관련 시민 제안사업 우선 검토, 시정현안 관련 시민 관심도 높은 공모 주제 제시 등
시민참여예산 위 원 회 운 영 및 정 비	▶ 제7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인원: 100명(위촉 91, 당연 9) • 임기: 2년('23.1.1.~'24.12.31.) ※ 제8기 위원 모집('24.10.~12.) • 역할: 제안사업 심사, 주요사업 시민의견 제출 등 ▶ 위원 구성시 참여계층 확대 (청년, 안전사고 취약자 등) • 안전사고 예방 등 시민참여예산제의 사회적 역할 강화로 다양한 참여계층 참여 보장(조례개정 등)
예산 전과정 시 민 참 여 확 대	▶ 추진현황, 미반영 사유 등 추진결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 행안부 주민e참여예산시스템 통합 추진 등 ▶ 성과평가 토론회 개최로 결산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 ▶ 청년, 아동 등 찾아가는 예산교육 실시
참 여 예 산 역량강화 및 이 해 증 진	▶ 수요자 맞춤형 참여예산 교육 실시 (사이버교육 등) ▶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컨설팅단 구성·운영 ▶ 홍보 강화로 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참여유도
소 통 강 화	▶ 예산심의 대비 시 의회 소통 강화 (집담회, 토론회, 간담회 등 적극 활용)

□ 추진일정 (공모)

사업공모·발굴 (4~5월)	⇒	사업검토 (6월)	⇒	사업심사 (7월)	⇒	사업선정 (7~8월)	⇒	예산반영 (9~12월)
인터넷, 팩스 등 * 상시접수 병행		사업분류 및 소관부서 지정 사업부서 검토 속의 토론 등		시 참여예산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시민 투표 사업최종 선정 총회 승인		예산편성 시의회 의견서 제출 시의회 예산심의

※ 공모 외 : 온라인플랫폼(광주온)접수건은 총회 이전(8월말)까지 접수, 이후 차년도로 이월

목 차

I. 시민참여예산제 개요	1
II. 2023년 운영성과 및 2024년 개선안	2
III. 2024년 시민참여예산 목표 및 추진방향 ..	4
IV. 2024년 세부 운영계획	5
1. 내실있는 제안사업 발굴	5
2.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정비	14
3. 예산 전 과정에 시민 참여 확대	17
4. 시민역량 강화 및 이해증진	23
5. 부서협조 사항	27
 〈 참고자료 〉	
① 2024년 예산과정별 순기표	29
② 분과위원회 소관간사 부서 현황	30
③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사 평가표	31
④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	32
⑤ 제7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명단	33
⑥ 모니터링단 및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명단	34
⑦ 관련 규정	35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계획

I 시민참여예산제 개요

1. 목 적

- 예산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자원 배분의 공정성 제고
- 시민과 소통하는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여 재정민주주의 실현

2.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11.4.1. 제정)

3. 추진경과

구 분		주 요 내 용
제1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80명	(운영기간) 2011. 09. 14. ~ 2013. 04. 30. (예산편성 의견수렴) 23건 155억 원 - '12년 8건 52억 원, '13년 15건 103억 원
제2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80명	(운영기간) 2013. 05. 01. ~ 2015. 04. 30. (예산편성 의견수렴) 41건 168억 원 - '14년 23건 76억 원, '15년 18건 92억 원
제3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100명	(운영기간) 2015. 05. 01. ~ 2017. 04. 30. (예산편성 의견수렴) 104건 180억 원 - '16년 78건 125억 원, '17년 26건 55억 원
제4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100명	(운영기간) 2017. 05. 01. ~ 2019. 04. 30. (예산편성 의견수렴) 58건 141억 원 - '18년 24건 66억 원, '19년 34건 75억 원
제5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99명	(운영기간) 2019. 05. 01. ~ 2020. 12. 31. (시민 제안사업 공모) 87건 140억 원 - '20년 35건 72억 원, '21년 52건 68억 원
제6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100명	(운영기간) 2021. 01. 01. ~ 2022. 12. 31. (시민 제안사업 공모) 112건 109억 원 - '22년 48건 58억 원, '23년 64건 51억 원
제7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100명	(운영기간) 2023. 01. 01. ~ 2024. 12. 31. (예산편성 의견수렴 / '23.9.14.) 71건 105억 원 - '24년 15건 16억 원

1. 2023년 운영성과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 청년 정책의 안정적 발굴을 위한 분과위 확대 ('22년 7개 ⇒ '23년 8개)
- 접수(402건)된 제안사업의 심의(71건), 편성(15건, 16.28억원) 등 예산 과정에 참여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이해를 높임
- 운영위원회(3회), 전체회의(2회), 분과회의 (8개분과/5회)

□ 예산편성, 집행 등 전 과정 시민참여 유도

- 예산집행 상황 등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실시(7월,11월)
- 본예산(안) 편성 및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견 제시
- 예산 바로쓰기 감시단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시민참여예산제 홍보 다각화

- 포스터(2,500부), 리후렛(3,000매) 시·자치구 민원실 등 배부
- SNS(블로그, 카드뉴스),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송출 등
- 찾아가는 현장 교육, 반상회 및 이·통장회의를 통한 홍보 등

□ 시민참여예산 역량제고를 위한 맞춤형 예산학교 운영

- 대상별·단계별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 자치구(9회 316명), 전문강사 및 컨설턴트양성 과정 (3회 84명) 등
- 참여예산 기본 교육 및 워크숍, 참여예산 분과별 위원 심화과정, 모니터링단 교육 (2회 46명)등

□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모색으로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제고

- 성과보고를 위한 공감토론회 개최(12월) 및 우수 제안자 포상(5명)
- 2024년도 예산편성 관련 시민설문조사('23.10월/광주온/3,427명) 실시

2. 2024년 (단계별) 개선 방안

2023년도와 달라진 점

- ① 공모 외 (온라인플랫폼 '시민광장 광주온') 접수 확대
- ② 제안자 예산 소 과정 참여보장
- ③ 자치구와 역할 분담 (광역사업 발굴, 중복 신청 배제 강화, 연구회 운영 등)

제안

■ 공모 외 사업발굴

- 온라인플랫폼(광주온)과 연계 ※ 광역시 최초

■ 시민참여 부서와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 기대

- 시민소통과 시민정책참여단, 자치행정과 주민총회(주민자치회) 등에 제도 홍보와 참여 요청

■ 중복 신청 방지를 위한 검색 시스템 구축

- 재정365연계, 기존 제안 사업들의 빅데이터화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링크), 행안부 주민 e참여시스템 통합 추진

■ 파급효과가 크고,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부서와 위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비 조정

숙의

■ 예산 소 과정(컨설팅, 분과위원회, 총회 등)에 제안자 직접 참여

- 제안자가 사업부서·전문가와 함께 컨설팅을 받고 정책화 하는 일련의 숙의·공론화 과정에 직접참여 하여 제도 의의 달성

제안사업중 유사 사업의 경우 그룹화하고, 대표 제안자를 선정하여, 일련의 과정에 제안자가 직접 참석하여 사업 설명 및 발표 (회의 장소 제공 등 행정사항 지원)

■ 현장방문이 필요한 제안사업의 경우 현장방문 실시 (사업부서 인솔 및 현장설명)

■ 컨설팅단 구성시 의회에 예산 전문가 추천요청으로 제도 이해와 공감대 형성

참여

■ 다양한 계층 참여로 사각지대 없는 소통

예산교육	아동, 청소년 찾아가는 교육 실시
조례개정	청년 위원 참여 보장
위원구성	제8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시 취약계층 등 다양한 위원 구성

■ 안전사고 예방사업 우선 검토·선정

- 참여예산의 사회적 역할 강조

■ 다양한 콘텐츠 활용한 홍보 강화

- 웹툰, 보도자료, 블로그, 유튜브 등
- 우수사업 제안자 및 수혜자 인터뷰 영상 제작 등

■ 사업선정시 제안자 등 일반시민 참여

- 총회에 제안자, 정책참여단, 시의원, 일반시민 등 각계각층 골고루 참여 (참여예산위원 50점+일반 시민50점 배점으로 공정한 순위 선정)

평가·환류

■ 성과평가토론회 개최

- 운영 경과보고, 우수사례 표창, 경진대회 개최 등 발전방안 모색

■ 사업종료 후 성과물 표지판 제작으로 성과 홍보 및 주민 효능감 제고

■ 시민 설문조사 등으로 철저한 환류방안 검토·마련

■ 시민체감도 높은 광역형 사업 발굴

- 중복배제 등 내실있는 사업 발굴을 위한 심사 기준 강화(유사중복성,안전성)

■ 도시형 광역모델 발굴 및 지속 발전방향 모색

- 자치구와의 역할 분담으로 광역만의 고유 역할과 기능 발굴을 위한 연구회 운영(학계,공공기관, 주민활동가 등 참여)
- 행안부 운영 지침에 의거, 현 여건과 상황에 맞추어 단계적 제도 개선 추진

□ 예산목표액 : 125억 원 (공모 90%, 공모 외 10%)

합 계	사 업 유 형				비 고
	시정참여형	청년 참여형	지 역 참 여 형	동단위계획형	
125억	90억	10억	20억	5억	공모 외 : 시정참여+청년참여 (시 소관사무)

□ 목표 및 추진방향

목 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통한 재정 운용의 투명성 제고

추진방향

- 예산의 **쫑** 과정에 사업 제안자 참여 보장 및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 규모 있고 의미 있는 광역단위 참여예산 제안사업 중점 발굴
- 자원 배분의 공정성 제고와 시민과 소통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

추진전략

- 1 내 실 있 는
제 안 사 업
발
- 2 시 민 참 여 예 산
위 원 회
운 영 · 정 비
- 3 예산 전(쫑)과정
시민 참여 확대
- 4 시민 역량강화
및 이해증진
- 5 소 통 강 화

추진과제

- 1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발굴 추진 (공모+공모 외)
- 2 제안사업 발굴 활성화
- 1 제7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2 위원 구성시 참여계층 확대 (청년,안전사고 취약자 등)
- 1 추진현황, 추진결과 등 투명한 정보공개
- 2 성과평가 토론회 개최로 결산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
- 1 수요자 맞춤형 예산교육 실시
- 2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컨설팅단 구성·운영
- 3 홍보 강화로 시민 이해도 증진과 참여유도
- 1 예산심의 대비 시의회 소통 강화

1 내실 있는 제안사업 발굴

1.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발굴 추진

◇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규모 있고 의미 있는 광역단위 참여예산 사업 발굴 운영

□ 사업유형 (공모 90% + 공모 외 10%)

구 분	시(100억)		자치구(25억)		비고
	시정참여형	청년참여형	지역참여형	동단위계획형	
사업규모	90억 원	10억 원	20억 원 (구별 실링 내 통합 관리)	5억 원	
사업비	5억 원 이하	상·하한선 無	5천만 원 이하		
대상사업	시 전체 또는 2개구 이상 걸쳐있는 도시문제 해결 및 시민 편의 향상사업	마을단위, 자치구 대상 지역사회 주민 불편 해소 및 편의 향상 사업			
	시민 관심이 높은 주요 주제	일자리, 저출산, 맞춤형 교육 등 청년지원사업	- (동단위 계획형) '동 주민총회' 의제 발굴 기준 충족 * 계획별도 수립		
추진방법	사업공모 + 공모 외 (광주온)		사업공모	주민총회	

※ 공모 외(온라인플랫폼 '시민광장 광주온' 접수) : 시정참여형, 청년참여형 (시 소관사무)

□ 유형별 추진절차 (공모)

구 분	사업공모·발굴 (3~4월)	사업검토 (4~6월)	사업심사 (6~8월)	사업선정 (8월)	예산반영 (9~12월)
시정 참여 형	· 인터넷, 팩스 등 * 상시접수 병행	⇒ · 시사업부서 검토	⇒ · 시참여예산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최종심사	⇒ · 시민 투표 · 사업최종 선정 · 총회 승인	⇒ · 예산편성 · 시의회 의견서 제출 · 예산심의
청년 참여 형					
지역 참여 형	· 인터넷, 팩스 등 * 상시접수 병행 · 區소관 제안사업 (市→區 이관)	· 區별 사업이관 · 區사업부서 검토	· 區참여예산위원회 및 市참여예산운영위원회 최종심사	· 市총회 승인 (지역참여형, 동단위계획형, 시민광장광주온)	
동단 위 계 획 형	· 주민총회 → 동주민센터 제출 → 區				

※ 공모 외(광주온)는 시민소통과에서 예산실로 총회 이전(8월말경)까지 통보, 이후 접수건은 차년도로 이월

1-1 시정참여형 사업 <시 소관 사무>

- ◇ 시 소관 업무 중 시 전체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시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 발굴
- ◇ 시민의 불편과 어려움은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광역단위 사업 중점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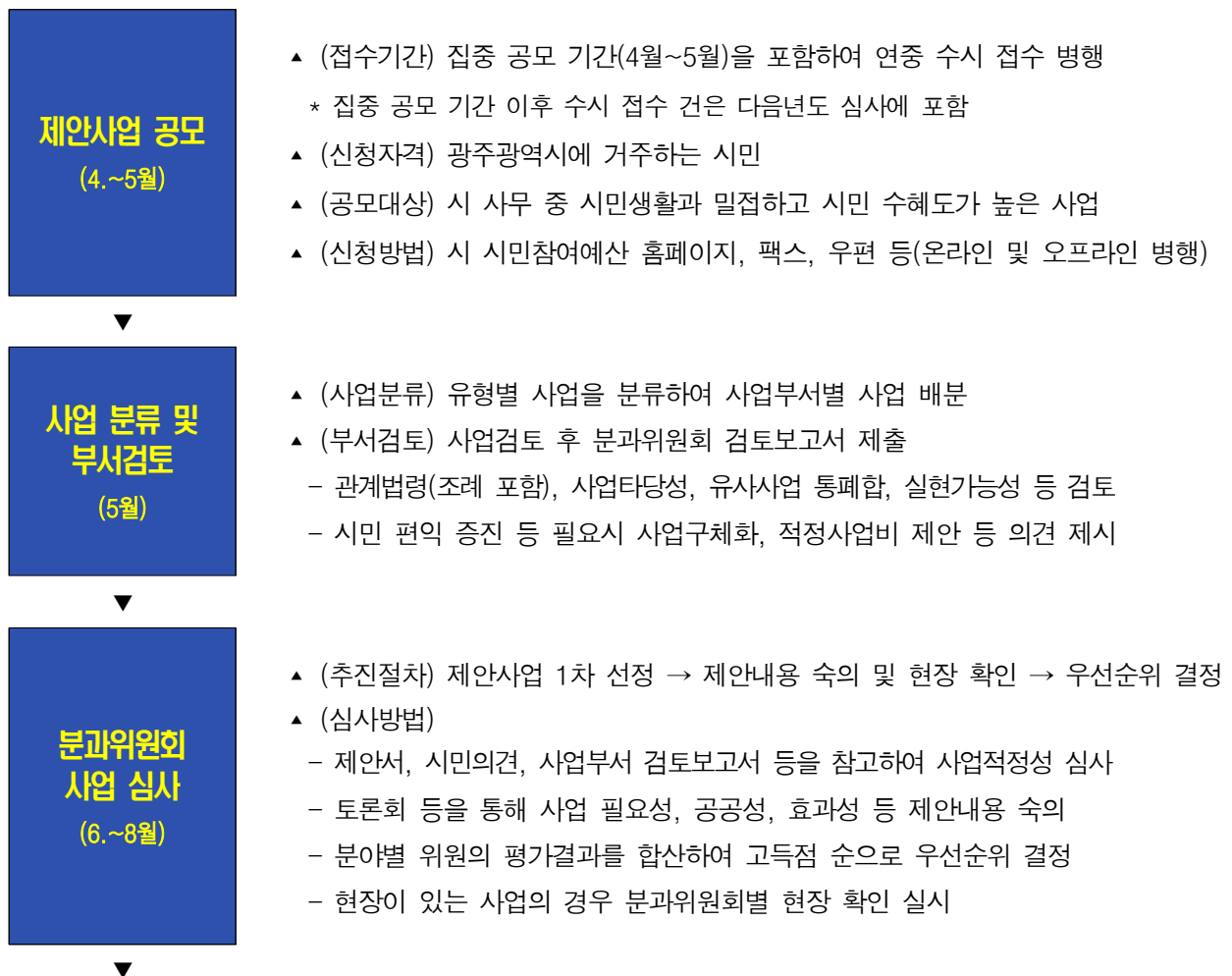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시 소관 사업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시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
- 시정 현안과 관련한 시민 관심이 높은 주요 주제
- 2025년 사업 완료 가능한 5억 원 이하 사업

○ (예산규모) 90억 원

○ (추진절차)



**운영위원회 최종
사업심사**
(8월)

- ▲ 시 분과위원회 등 심사 적정여부 최종 심사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총회**
(8월)

- ▲ 일반시민과 참여예산위원 투표로 시정참여형 사업 최종 선정



**시민참여예산사업
예산안 반영**
(9.~12월)

- ▲ 사업부서별 시민참여 예산사업에 선정된 최종사업을 예산안에 편성
- ▲ 예산안과 예산편성에 관한 시민의견서 의회에 제출
- ▲ 예산심의 전 시민참여 예산사업에 대해 시의회에 사전설명

※ 시민광장 광주온 (시민소통과에서 예산실로 결과 통보) → 총회 승인(8월말) → 예산안 반영 (9~12월)

[시민참여예산사업의 부적합 사업 예시]

- 현행 법령(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조례를 위반하는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 현재 추진중인 사업
- 국가 직접사업, 국비보조사업, 국비매칭 사업
- 이미 설치·운영 중인 시설의 운영비 요구 등 특정한 또는 특정 단체 이익을 위한 사업
- 공공청사 기능보강사업, 사업목적을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
- 단순 일회성 공연/축제/행사 사업
- 도로개설 및 가로수 보호시설 정비 및 생육환경 사업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1-2 청년참여형 사업 (시 소관 사무)

◇ 일자리, 창업, 교육, 창작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지원형 사업으로 청년이 희망이 되는 사업 발굴

□ 추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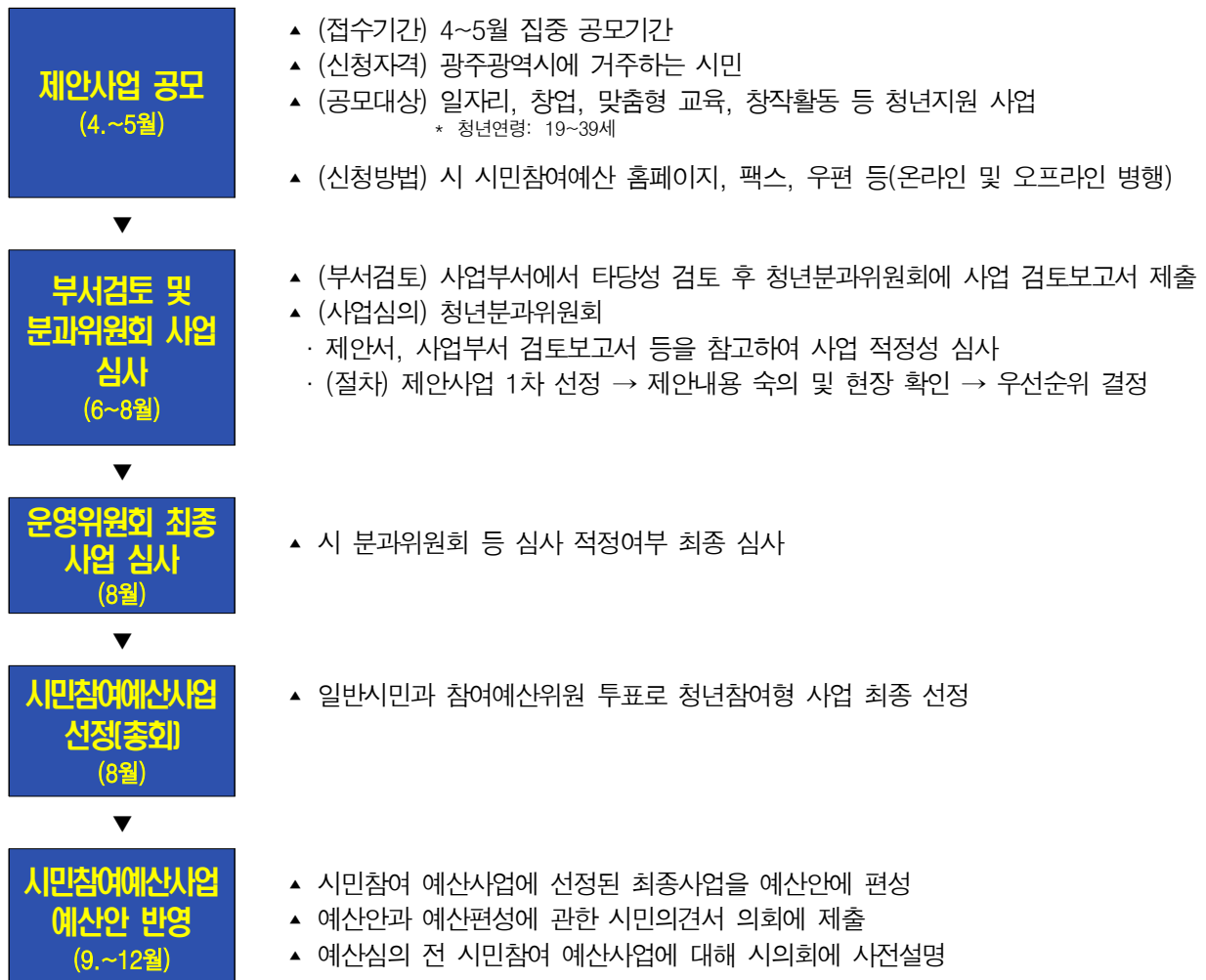
○ (사업대상)

- 청년의 일자리, 창업지원, 맞춤형 교육, 창작 활동 등 청년이 희망이 되는 청년정책 사업

○ (예산규모) 10억 원

○ (운영주체) 청년 분과위원회

○ (추진절차)



1-3 지역참여형 사업 (자치구)

◇ 지역 사회 주민불편 등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사업과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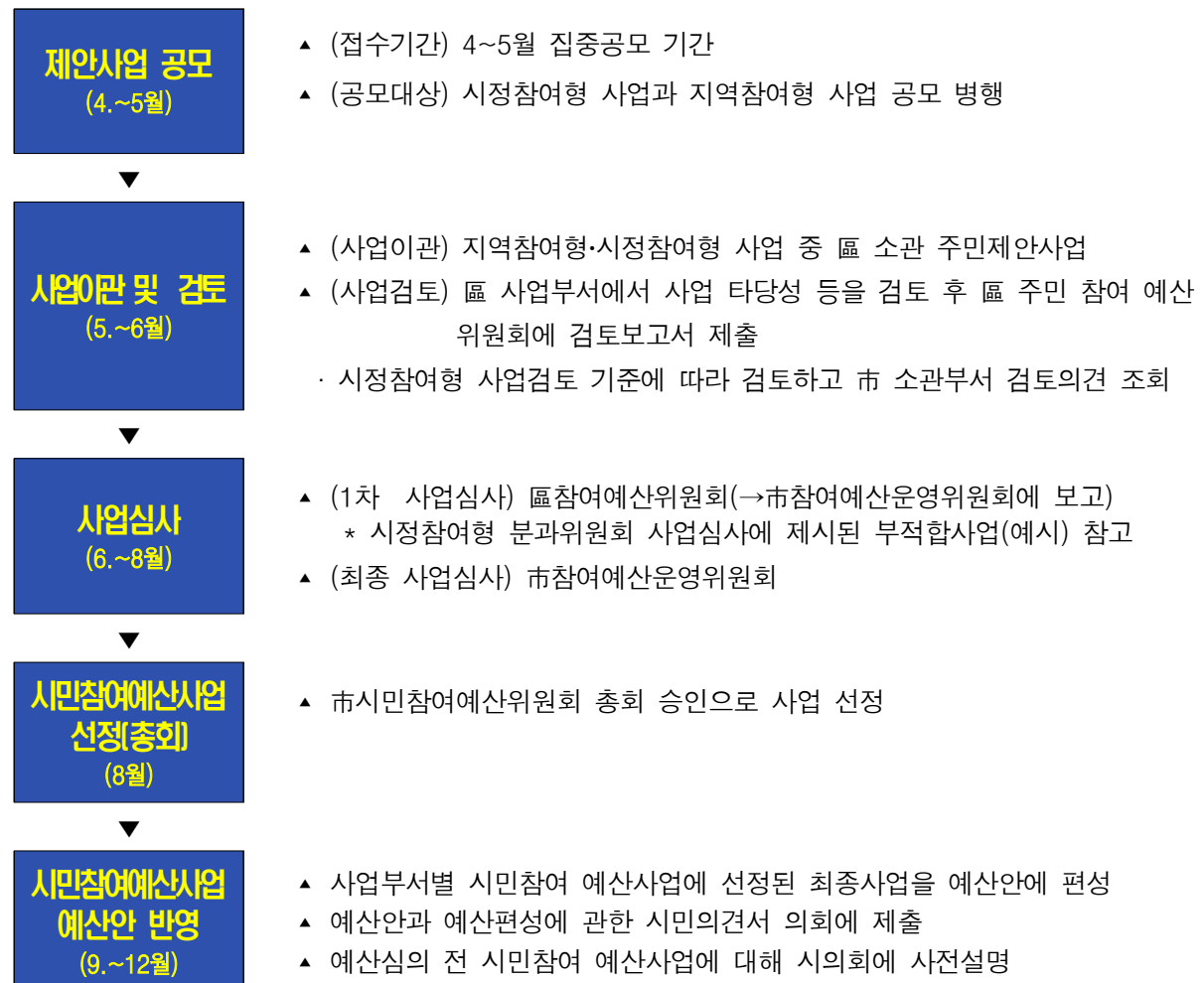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자치구 소관 사업으로 지역사회 주민불편 등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사업
- 사업실행력·전파가능성이 있으며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 2025년 사업완료 가능한 5천만 원 이하 사업

○ (예산규모) 20억 원 * '24년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결과 반영 조정

○ (추진절차)



1-4 동단위계획형 사업 (자치구)

◇ 주민참여를 통해 발굴·선정한 지역의제(동 현안)를 주민이 직접 실행까지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창구 마련

* 지역(동)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동단위 주민자치 기반 조성

□ 추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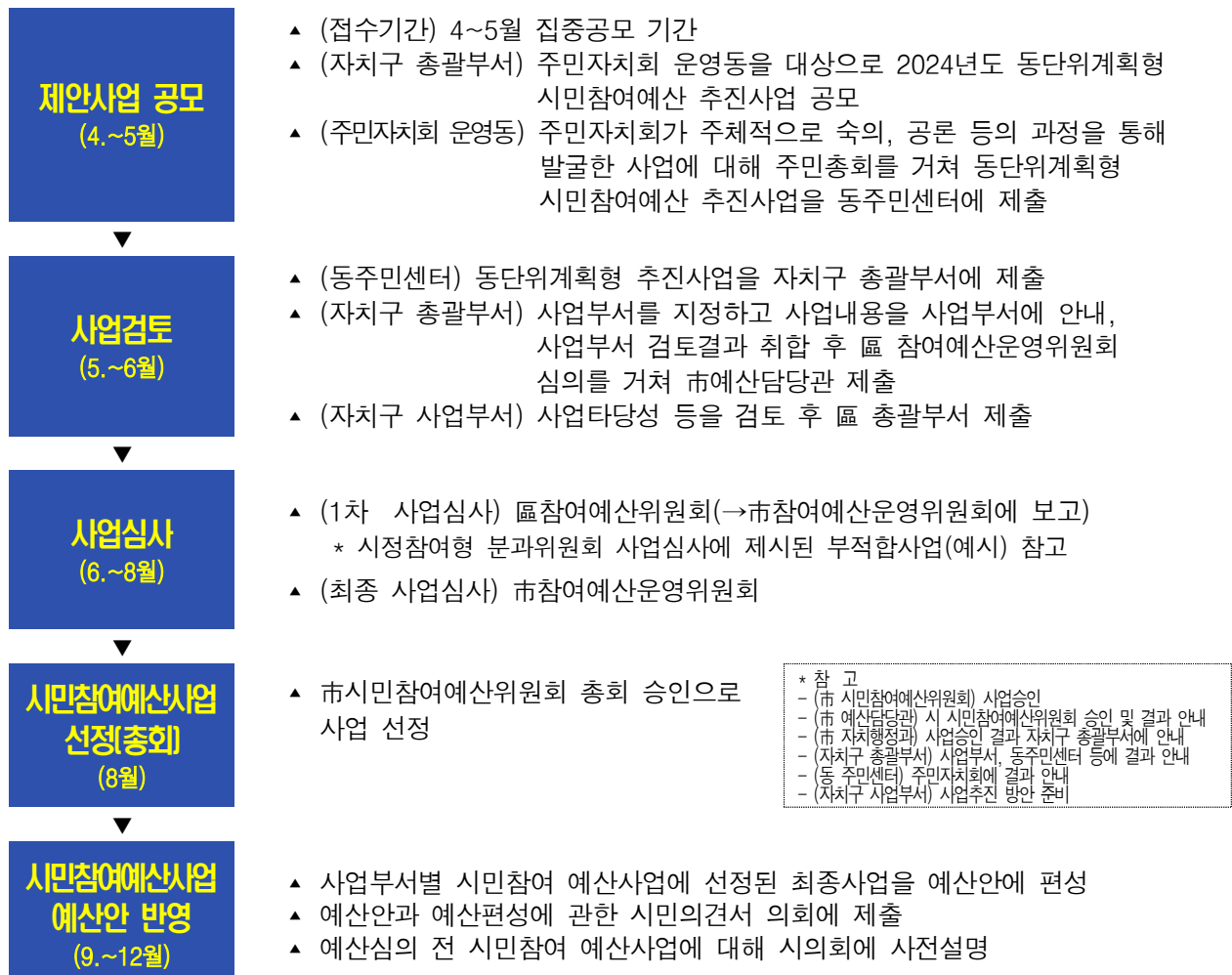
○ (사업대상)

- 주민자치회 운영동을 대상으로 육아, 안전, 복지, 교육, 경제, 공간, 문화, 위생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
- 사업실행력·전파가능성이 있으며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 (예산규모) 5억 원

* 자치구별 1억원 범위 내 통합관리(동별 최소 10백만 원 ~ 최대 50백만 원 범위 내)

○ (추진절차)



2. 온라인플랫폼 (시민광장 광주온)으로 사업제안

□ 추진 필요성

- 기존 공모로만 사업제안을 받은 상태에서,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 ‘광주온(on)’ 연계로 사업발굴 방안 확대

 <당초> 공모 → <변경> 공모 + 공모 외 (시민광장 광주온)

【 시민광장 광주온(on)】

- ❖ 광주온? 시민 누구나 사업제안·공감·토론으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
- 30일 이내 50표 공감채택시 제안자·사업부서·시민권익위가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감
 - ❖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김양현 전남대 교수)
 - 위원수 : 50명 (위촉41, 당연9 ; 5개 자치구부구청장 등) / 임기 : 2년 *최초출범 : '18.8.
 - 주요기능 : 심의·자문(온라인 플랫폼 정책제안, 실행방안 심의, 해법제시 및 자문 등)
 - 추진성과 : 공공수영장 장애인 가족 탈의실 설치, FC축구 전용구장 안전성 확보 등 69건

□ 추진절차



※ 광주온을 통한 제안사업은 총회 이전(8월말경)까지 접수하며, 이후 권고건은 차년도 이월

□ 기대효과

- (대표성) 누구나 제한없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제안 가능
- (공공성) 숙의·공론화(공감50표 등)를 통해 공공성 검증 가능
- (전문성) 부서 검토와 전문가 실행방안 자문으로 보다 품질 높은 사업발굴 가능

3. 기타 제안사업 발굴 활성화

□ 시민참여 부서간 협업 강화

○ 부서간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 거양

- 시민정책참여단(시민소통과), 주민총회(자치행정과) 등에 시민참여예산 제도 홍보와 참여요청. 특히, 온라인플랫폼 광주온(시민소통과 운영)을 통한 사업 제안시 투명성·민주성·공공성·전문성 확보 가능
- 연구회 운영시 시민참여 부서와 함께 시민참여예산제의 실행방안 모색가능

□ 안전사고 예방 관련 시민 제안사업 우선검토·선정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참여예산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안전사고 관련 시민 제안사업 우선 검토·선정

- 재난안전법 제31조의2 및 (행안부)2024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

□ 시정 현안 관련 시민 관심도 높은 공모 주제 제시

○ 제안사업의 채택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부서에 핵심 현안 사업

주제를 요청하고, 공모시 주제를 제시하여 시민참여와 관심도를 높임

-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민안전교육 강화, 5.18기념공원 내 자연친화적 맨발길 조성 등

□ 시민 편익에 파급효과가 클 경우 사업비 조정

○ 파급효과가 크고,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부서, 위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비 상·하안선 조정

□ 단순민원 처리나 관행적 사업예산 배분 예방

- 기존 사업부서에서 추진중이거나 기 추진했던 사업을 검색 할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역단위 규모있고 의미있는 사업 발굴
 -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지방재정 365링크 연결 *인천시 벤치마킹
 - 기존제안 사업들의 빅데이터화로 시각화하고 제안사업 접수시 등 참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안내 추진
 - (행정안전부) 주민e참여시스템 통합 추진

□ 예산 전(全) 과정에 제안자 직접 참여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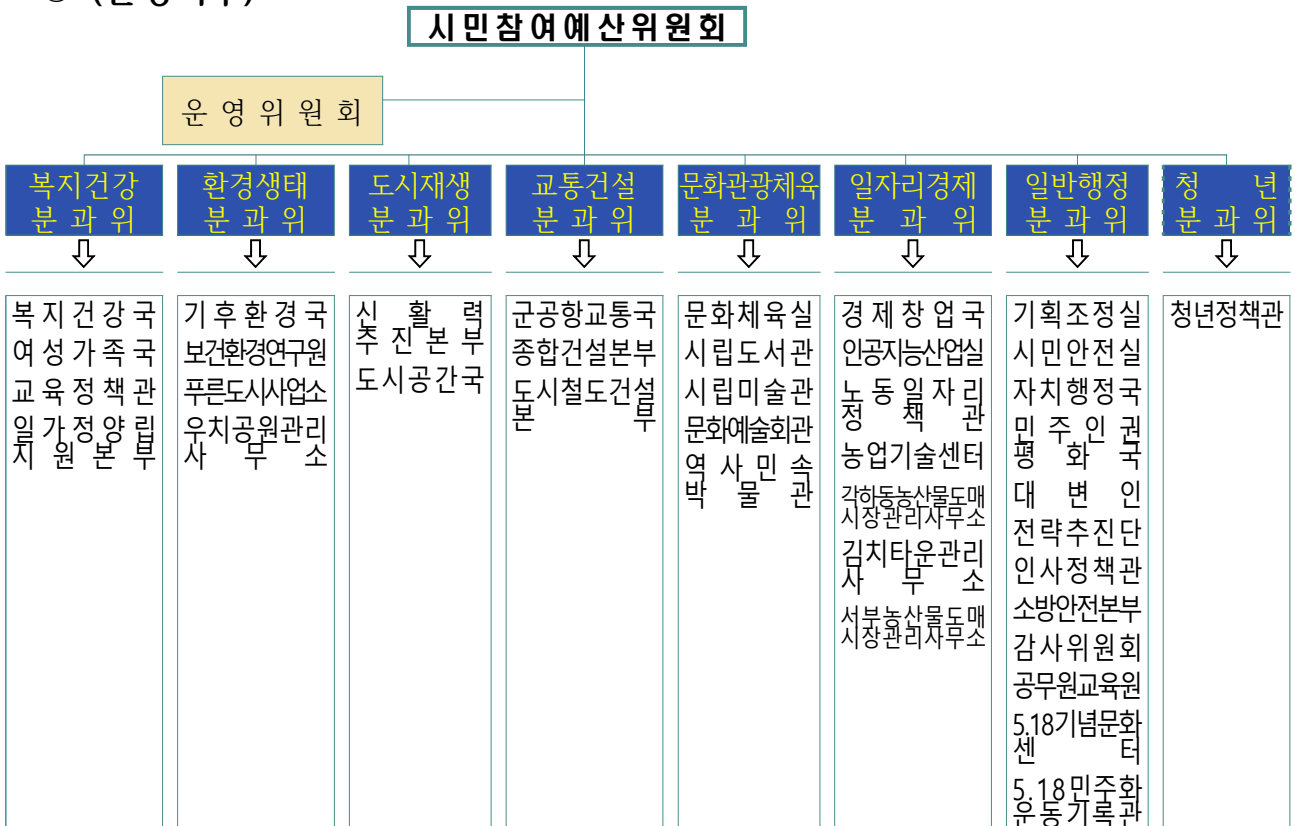
- 제안자가 사업부서·전문가와 함께 컨설팅을 받고 정책화 하는 일련의 숙의·공론화 과정에 직접 참여 보장
 - 제안사업중 유사 사업의 경우 그룹화하고, 제안자 중 대표자를 선정하고, 일련의 과정에 제안자(대표자)가 직접 사업 설명 및 발표 (회의 장소 제공 등 행정사항 지원)

1. 제7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참여예산위원 대표성과 책임감을 강화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

□ 구성개요

- (인 원) 100명(위촉직 91, 당연직 9)
- (임 기) 2년('23. 1. 1. ~ '24. 12. 31.) * 제8기 위원 모집 ('24.11.~12.)
- (운 영)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8개)
- (임 원) 위원장, 부위원장 * 간사(예산담당관)
- (주요기능)
 -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과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 예산과정에 참여와 그에 따른 의견 제출
- (운영기구)



① 운영위원회

- (구성인원) 18명(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부위원장)
- (기능)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조정 등

② 분과위원회(8개)

- (구성인원) 분과위별 11~13명
- (기능) 제안사업 심의 및 예산편성 시 시민의견 수렴 등

③ 기타사항

- (회의및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주요내용

○ 시민참여예산위원 역량을 강화하여 참여예산 전문가 양성

- 시민참여예산위원 대상 예산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제안사업 관련 실무교육, 모니터링 방법 등 교육
- 예산학교 교육 이수율과 회의 등 참석률 저조한 경우 연임에서 배제(60% 미만)

○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위한 토론회 (11~12월 중)

- 전문가, 시민참여예산위원 등이 참여하여 타시도 우수사례 공유
- 위원 역량 강화 및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 방안 강구

□ 운영일정

운영계획 심의	제안사업 검토·심사	총회 개최	예산안 의견 수렴	토론회 개최
운영위원회	⇒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 시민, 예산위원 등	⇒ 분과위원회	⇒ 시민, 예산위원 등
3월	6~8월	8월	9~10월	12월

2. 제8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정비 (다양한 계층 참여 보장 등)

☐ 추진근거

- (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
-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 추진내용

- 안전사고 취약계층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보장
- 청년참여 의무화
- 찾아가는 아동·청소년 예산교육 운영, 참여예산기구 운영 다변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야간 개최 및 참여 마일리지 제도 검토 추진 등)

☐ 향후계획

- 제8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시 다양한 참여 계층 위촉 : 10 ~ 12월

3 예산 전(全)과정에 시민 참여 확대

◇ 예산편성 · 집행 · 결산 등 예산 전 과정에 시민참여 보장

3-1 시민투표 실시 예산편성

□ 필요성

- 일반시민이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투표를 실시하여 참여예산에 대한 관심제고 및 참여민주주의 실현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4. 7 ~ 8월 중 (1개월)
- (대 상) 제안사업 (공모 + 공모 외)
- (참여방법) PC, 모바일로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 접속
- (투표자격) 시민, 참여예산위원
- (결과발표)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총회 현장
- (결과반영) 위원 투표(50점) + 시민 투표(50점)

□ 추진방법

- 총회 개최 전 온라인·모바일 일반 시민투표 실시(사전투표기간 1개월)
- 전체대상 사업의 10% 선택하여 투표(중복 선택 불가)
 - (일반시민) 분과위원회별 사업 구분 없이 선택
 - (참여예산위원) 소속분과 사업(2%)과 타 분과사업(8%)을 구분하여 선택

3-2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총회 개최

예산편성

□ 필 요 성

-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선정하는 총회에 위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

□ 추진개요

- (일시/장소) 2024. 8월 말 / 시청 회의실
- (참석인원) 200여명
 - 시의원, 참여예산위원, 정책참여단, 일반 시민 등
- (주요내용)
 - 사업 설명, 질의응답 및 투표
 -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 결과 발표

3-3

시민의견 수렴 및 의회 제출

예산편성

□ 시민 설문조사 실시

- (기 간) 2024. 7. ~ 8월
- (대 상) 1,000여명(일반시민) * 자치구, 연령, 성별 등 안배
- (내 용) 2025년 예산편성 방향 등 재정운용 전반
- (방 법) 온라인(시 홈페이지), 오프라인(민원실 비치 등) 병행
- (결 과) 시 홈페이지 결과 공개, 예산편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시 전체 예산에 대한 시민 의견 제시

- (기 간) 2024. 9. ~ 10월
- (방 법)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별 의견수렴
- (내 용) 2025년 시 전체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의견제시
 -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신규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포함
- (결 과) 주민의견서 시 의회에 제출

3-4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단 운영 예산집행

□ 모니터링단 구성

- (구성인원) 30여명(시민참여예산위원)
 - * 분과위원회별 대상 사업을 고려하여 모니터링단 구성(2인1조)
- (주요내용) 2024년도 예산에 편성된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 모니터링단 운영

- (운영기간) 2024. 11월
- (대 상) 2024년 시민참여예산편성 사업 (15개 16억 원)
- (추진절차) 사업부서 추진현황 제출 → 모니터링 → 결과통보 및 조치
- (점검방법) 서면 검토 + 현장 확인(필요시)
- (점검내용) 사업 추진현황, 부진사유, 예산낭비 요소 등 전반적 점검
 - 모니터링 결과는 서면심사와 현장확인 자료를 종합해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공개

* 현장 확인은 분과위원회별 간사부서 주관으로 사업현장 여건에 맞게 진행 <사업부서 인솔 및 현장 설명>

* 절차 ① 방문계획 수립 (간사부서) → ② 방문지 선정 (사업부서) → ③ 현장방문 (간사부서에서 위원 인솔) → ④ 현장설명 (사업부서) → ⑤ 결과제출 (간사부서) → ⑥ 수당지급 (예산담당관)

3-5**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운영****예산집행**

- (구성인원) 30여명(시민참여예산위원)
- (임 기) 2024. 3. ~ 2024. 12.
- (주요역할)
 -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 신고,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 조사
 - 예산낭비신고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 낭비신고 관련 제도개선 등
- (처리절차) 예산낭비신고(제안·건의 사항 포함) → 부서검토 → 결과회신

3-6**2023년도 예산결산 공개 및 시민의견 수렴****성과평가**

- (기간/대상) 2024. 7. ~ 8월 / 일반시민, 시민참여예산위원
- (추진절차) 결산 의회승인 → 결산 고시·공개 → 결산정보 공개 → 의견수렴
- (주요내용)
 - 주요사업 결산 설명서 등 결산결과 시 홈페이지 공개 및 의견수렴 *회계과

3-7**시민 제안사업 추진결과 공개****성과평가**

- (추진기간) 2024. 12. ~ 2025. 1.
- (공개대상) 2025년 시민 제안사업
- (공개방법)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공개 (분과위원회 간사 부서, 區 등 협조)
- (공개내용) 적격여부, 미편성 사유, 소관부서, 예산반영 결과 등
- (기대효과) 예산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

3-8

성과평가 토론회 (공감 토론회) 개최

성과평가

□ 필 요 성

-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발전방안 모색
- 일반 시민의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참여 분위기 조성

□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2024. 11월 ~ 12월 중 / 시청 회의실
- (참석인원) 200여명
 - 일반 시민, 시·자치구 참여예산위원 등
- (주요내용) 시민참여예산제 유공자 포상 및 '23년 운영성과 보고
 -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과 공무원 등에게 표창장 수여
 - 운영성과 발표, 문제점 진단에 따른 개선방향 발표
 - 8개 분과위별 시민참여예산 발전방안에 대한 토의 후 결과발표
- (추진방법) 시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주관, 퍼실리테이터 등 행정 지원

□ 활용계획

- 토론 결과 다음년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반영

3-9

연구회 운영으로 제도 발전방향 모색 등

환류·개선

□ 필 요 성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전문가 참여하여 주민참여 예산제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함
- 단순 자문 협의 기능이 아닌 우리시만의 광역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구성·운영 개요

○ 추진목적 : 도시형 광역모델 발굴 및 지속발전 방향 모색

- 광역만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 발굴·연구 (우수사례 연구 등)
- 시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

○ 구 성 : 10여명 (추천 등)

- 시의원,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학계, 연구원, 예산관련 전문가, 마을활동가,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 (시민소통과, 자치행정과)참여
- 연구회 회장, 간사(재정관리팀장), 연구회 회원으로 구성

○ 기 간 : 2024. 4. ~ 12.

○ 내 용

- (회의개최) 연구회 회장 또는 연구회 회원 1/3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시 개최
- (운영내용) 안건 토의, 과제수행
- (결과발표) 총회 및 성과평가 토론회 등 주요행사시 연구결과 발표

4 시민역량 강화 및 이해증진

- ◇ 예산교육 과정의 다양화와 실무 위주 교육으로 참여역량 강화
- ◇ 분야별 전문가로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공모사업 제안자의 입장에서 컨설팅을 지원하여 시민 제안의 품질을 제고

4-1 시민참여예산 교육

□ 추진방향

-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및 올바른 참여방향 제시
- 시민참여예산 사업 질적 제고를 위한 수요자별, 과정별 맞춤형 교육
- 실무기법 향상을 통한 참여예산위원의 역량 강화
- 제안사업 선정 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진행

□ 운영개요

- (기 간) 2024. 4. ~ 12.
- (교육대상) 200여명(市·자치구 시민참여예산 위원, 일반 시민 등)
- (운영방식) 대면교육, 사이버 교육 등 *市 직접운영

□ 교육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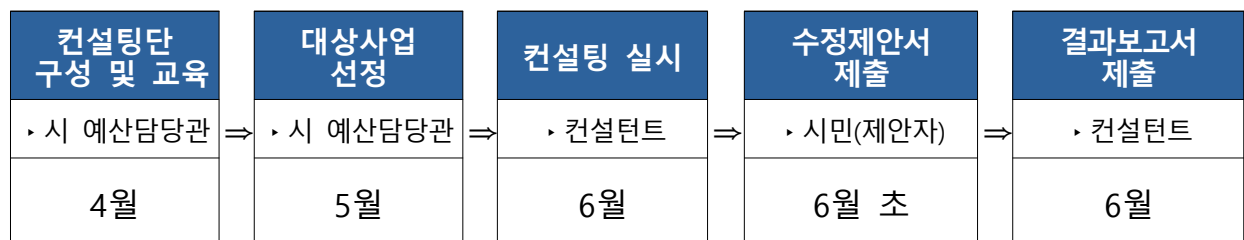
운영방식 / 시기	교육대상	교육내용
사이버 (상시)	일반시민, 참여예산위원	○ 시민참여예산제 개요 및 운영 현황, 운영방향, 운영사례 등
대면 혹은 화상 (4월)	시, 구 담당공무원	○ 시민 제안사업 구체화 및 타당성 검토방법 등
대면 (4월, 6월)	관내 아동 및 청소년	○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등
대면 (5월)	컨설팅단	○ 시민제안예산제 개요, 제안사업 구체화로 품질제고 방안 등
대면 (5월)	시 참여예산위원	○ (분과위원회 개최시) 시민 제안사업 심사 방법 교육 및 사례 안내
대면 (8월)	시민, 참여예산위원 등	○ (총회 개최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우수사례 공유 등
대면 (10월)	모니터링단 시민감시단	○ 예산낭비신고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 제도 개선 등
대면 (9~11월)	참여예산위원	○ (분과위원회 개최시) 주민의견서 작성 방법 등

4-2 컨설팅단 구성 · 운영

□ 운영개요

- (기 간) 2024. 4. ~ 5.
- (인 원) 20명 내외
 - 각 분야 민간단체 전문가, 전직 참여예산위원, 마을활동가 등으로 구성
 - 의회에도 예산전문가 추천 요청하여 시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 (역 할) 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컨설팅
 - 제안내용 구체화, 수정, 보완 등 제안자에 대한 상담 지원
 - 시정참여형 제안사업의 부적격 기준 숙지, 안내하여 사업품질 제고

□ 추진절차



4-3 **홍보 강화로 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참여유도**

- ◇ 다양한 매체 활용 온오프라인 홍보로 시민 관심 제고 및 참여 유도
- ◇ 참여예산 사업 성과 및 파급효과 등 홍보 강화(우수사업 등)

□ 다양한 SNS 채널 및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 웹툰,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톡채널, 유튜브 등
- 市·區 대표 홈페이지 및 직속기관·사업소 홈페이지 배너 활용

□ 전광판·빛고을TV 등 영상 매체를 활용한 홍보

- 관내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 및 빛고을TV를 활용한 시각적 홍보
- 인터넷 방송국(헬로광주)을 활용한 홍보

□ 대중교통을 활용한 지속 홍보

- BIS(버스도착안내시스템), 지하철 역사를 활용한 시민 홍보

□ 할자 매체에 익숙한 계층 대상 홍보

- 광주속삭임, 빛고을1번지, 서구소식, 남구이야기, 북소리, 행복광산 등
시·구 소식지 활용
-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배너 등 전통적인 수단을 활용한 홍보 실시

□ 현장방문 등 적극적 홍보활동 전개

- 시민현장(각종 행사 등)을 찾아가는 대민 접점 홍보
- 찾아가는 예산교육 운영(아동, 청소년) 등을 통한 지속적 홍보

- 우수사업 제안자 및 수혜자 인터뷰 영상 제작
- 성과물 인식 표지판 제작으로 시민참여 효능감을 제고 및 제도 성과 홍보
 - (예) ‘이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제안자 ○○○(이름표기)’라는 문구를 표지판에 삽입하고 사업 전과 사업 후의 사진으로 사업의 개선 효과를 홍보 할 수 있음

[중점홍보 사항]

- 2023년과 달라진 점
 - 행안부 주민참여예산시스템(주민e참여)으로 사업제안
 - 온라인플랫폼(광주온)으로도 사업제안 가능 (시 소관 사무만 해당)
 - 안전사고 예방사업 우선 검토·선정으로 참여예산의 사회적 역할 강조
 - 성과물 인식 표지판 제작, 우수사업 제안자 및 수혜자 인터뷰 영상 제작 등
 - 청년플랫폼 활용 및 청년 부서 협업으로 홍보강화로 대학생 등 청년층 관심과 참여도 제고
- 많은 시민이 참여를 위한 시민투표 및 총회(7~8월), 공감토론회 참여 홍보 (11~12월)
- 예산낭비 신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등 (상시)

V 부서 협조사항

관련부서	협조사항
전 부서	○ 예산 전(全) 과정에 시민 참여 확대에 적극 협조 - 결산, 예산편성, 집행, 반영/미반영 결과, 미반영시 사유 등 정보 공개 ○ 시민 제안사업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작성 (5월) ○ 총회 이후 적합 사업 2025년도 본예산 편성 (8월) ○ 2025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조서 작성(9월) ○ 필요시 현장 모니터링 등 간사부서 업무 지원
분과위원회 운영 소관부서 (간사부서)	○ 시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운영 - 회의 개최, (현장)모니터링, 주민의견서 작성 등 ○ 시민 제안사업 진행사항 홈페이지 등록
자치행정과	○ 자치구 주민자치센터에 시민참여 예산 교육 참여 홍보 - 특히, 주민자치위원 대상 참여예산 교육 독려
시민소통과	○ 온라인플랫폼 (시민광장 광주온)을 통한 시민참여예산 연계 정책 통보 (총회 전까지)
대변인	○ 시민참여예산 운영 홍보 협조 (언론매체 보도자료, 미디어 활용 방송 홍보 등)
공공데이터담당관	○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빅데이터화 추진
회계과	○ 지방재정법에 의거 결산 관련 시민 의견 수렴
인사정책관	○ 공무원 대상 예산교육시 상시학습 인정 ○ 시민참여예산 유공자 시장 포상
자치구	○ 시민참여예산 주민 참여 적극 홍보 (지역회의, 홈페이지, 반사회 자료 등) ○ 시민 제안사업 공모 집중 접수 홍보 (4~5월) ○ 담당 공무원 대상 예산 교육 참여
인재 교육원	○ 시민참여예산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나라배움터)

참 고 자 료

참고 1

2024년 예산과정별 순기표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예산 편성	운영 계획 수립·승인												
	제안 사업 접 수												
	컨설팅 단 구성·운영												
	사업 타당성 검 토												
	사업 심사												
	사업 선정 (총회개최)												
	예산 편 성 시 민 설 문												
	분과위원회 주민의견서 작 성												
	본 예산(안) 편 성												
예산 집행	모 니 터 링												
	시민감시단 운 영												
성과 (결산 평가)	연 구 회 영												
	성 과 평 가 토 론회개최												
역량 강화	예산교육												

참고 2

분과위원회 소관 간사 부서 현황

분과위원회	소관 실국본부	공무원 간사
복지건강	복지건강국, 여성가족국, 교육정책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돌봄정책과 (복지정책팀장)
환경생태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푸른도시사업소, 우치공원관리사무소	기후대기정책과 (기후대기정책팀장)
도시재생	신활력추진본부, 도시공간국	신활력총괄관 (이제는됩니다팀장)
교통건설	군공항교통국,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장)
문화관광체육	문화체육실, 시립도서관, 시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역사민속박물관	문화정책관 (문화도시정책팀장)
일자리경제	경제창업국, 인공지능산업실, 노동일자리정책관, 농업기술센터, 각하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김치타운관리사무소, 서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장)
일반행정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자치행정국, 민주인권평화국, 대변인, 광주전략추진단, 인사정책관, 소방안전본부, 감사위원회, 공무원 교육원, 5.18기념문화센터,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예산담당관 (재정관리팀장)
청년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장)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사 평가표(안)

<관리번호 : >

○ 분과명: 분과위원회

○ 사업명: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점수
		← 그렇지 않다		그렇다 ⇒			
		1	2	3	4	5	
안 전 성	사회적 약자 및 다수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입니까?						
필 요 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시 급 성	내년에 바로 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						
공 공 성	공익목적 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까?						
목 달 성 도	사업기간 동안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수 대 해 상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까? (특정단체의 인건비,운영비등 지원 목적이 아 닌지)						
양 성 평 등	한쪽 성별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남녀 성평 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사 업 비 적 정 성	사업목적 달성에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 였습니까? (사업비 과다 여부)						
소 계 (A)							

항 목	평 가 지 표	0	1	2	3	4	5	점수
가 점 (+)	(사업 우수성) 市 소관부서의 사업성 평가 결과가 우수합니까?							
항 목	평 가 지 표	0	-1	-2	-3	-4	-5	점수
감 점 (-)	(중복유사성) 시행중인 市·區 소관 사업과 중복 혹은 유사합니까?							
소 계 (B)								
[시 소관부서 사업검토 결과(요약)]								

합 계 (A+B)	
-----------	--

※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사업 평가 실시. 평가등급 ‘미흡’ 이하인 사업 ‘미선정’ 원칙
- 매우 우수(36점 이상) / 우수(35~32점) / 보통(31~24점) / 미흡(23~20점) / 매우 미흡(20점 미만)

※ 기타의견:

2024. . .

주민참여예산위원 성명

(서명)

참고 4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

○ 사업제안 신청인

신 청 인		주 소	광주광역시 _____ 구
연 락 처		이 메 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확인 및 관리를 위해 수집 이용됩니다.(상담·문의에 대한 답변 등)
- 주민참여예산 사업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 등

○ 보유·이용 기간: 5년 ※ 기간 만료 후 보유 정보 폐기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제안 신청이 제한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체크)

○ 컨설턴트에게 연락처, 이메일, 제안사업 내용을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체크)

※ 컨설턴트에게 연락처, 이메일, 제안사업 내용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컨설팅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안사업 내용

컨 설 팅 희 망 여 부	☐ 컨설팅 필요시 체크(광주시 사업만 신청 가능) ※ 컨설팅 희망 제안사업 중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실시(컨설턴트가 면담 등을 통해 수정·보완 지원)
분 야	☐ 문화관광체육 ☐ 복지건강 ☐ 환경생태 ☐ 도시재생 ☐ 일자리·경제 ☐ 교통건설 ☐ 일반행정(인권, 안전, 주민자치 등) ☐ 청년지원(일자리, 창업, 맞춤형 교육, 창작활동 등) *청년연령 : 19~39세
사업주제명	
사 업 명	
사 업 위 치	선택 (☐ 광주시 전체 ☐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광산구) ※ 사업위치(범위)가 여러 구에 속한 경우 중복 체크 가능 - 상세위치 : 광주광역시 _____ ※ 도로명 또는 지번주소
소요사업비	사업비: 천원
사 업 기 간	2025. . ~ 2025. . .
사 업 목 적 (제안취지)	
사 업 내 용	
사 업 효 과	

※ 제안사업 관련 별지 첨부(사진, 기타자료 등) 추가 가능

참고 5

제7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위원 명단

연번	분과위원회	위 원 명 단	비 고 (주무부서/간사)
(위원장) 송원영 (부위원장) 빙성수			
8개 분과위원회, 위촉 위원 91명			
1	복지건강 (12명)	(위원장) 김광희 (부위원장) 이현숙 강경식, 김숙희, 김진희, 김호곤, 박용기, 전승옥, 전준명, 차진환, 최영혜, 한동기	돌봄정책과 (복지정책팀장)
2	환경생태 (12명)	(위원장) 서은하 (부위원장) 허만신 김선숙, 김진숙, 김희연, 박성자, 박태봉, 배현진, 송원영, 신석기, 양인희, 조미숙, 허만신	기후대기정책과 (환경정책팀장)
3	도시재생 (11명)	(위원장) 서영원 (부위원장) 김현정 김대중, 김양택, 김용진, 김희상, 박연채, 오재숙, 유윤정, 정진, 조준혁	신활력총괄관 (이제는됩니다 팀장)
4	교통건설 (11명)	(위원장) 김연수 (부위원장) 서양님 김용금, 김재철, 김종호, 김현택, 나병준, 백승권, 유전훈, 이성우, 최혜숙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장)
5	문화관광체육 (12명)	(위원장) 김병희 (부위원장) 노연금 고오주, 김두한, 김은정, 노향자, 류철환, 박은영, 선미영, 안남열, 안홍균, 이현미	문화도시정책관 (문화도시정책 팀장)
6	일자리경제 (11명)	(위원장) 성명심 (부위원장) 김동찬 강민제, 김금숙, 김병열, 민은숙, 박연님, 이종국, 정광임, 정도연, 한재동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장)
7	일반행정 (12명)	(위원장) 추연삼 (부위원장) 강영옥 강광희, 김영주, 김예복, 박현자, 빙성수, 서현미, 심우섭, 윤영복, 윤장미, 이민철	예산담당관실 (재정관리팀장)
8	청년 (10명)	(위원장) 김하린 (부위원장) 정재영 김아람, 김윤아, 김태완, 남혜린, 박범진, 백형님, 이윤미, 장은미	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장)

참고 6

모니터링단 및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명단

분과위원회	모니터링단 (35명)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32명)
복 지 건 강	이현숙, 전승옥, 차진환, 최영혜,	강경식, 김숙희, 전준명, 한동기
환 경 생 태	김희연, 박태봉, 김선숙, 배현진, 송원영, 양인희	김진숙, 서은하, 조미숙, 허만신
도 시 재 생	김대중, 김양택, 김용진, 박연채	김현정, 김희상, 유윤정, 조준혁
교 통 건 설	김종호, 나병준, 유전훈, 서양님	김용금, 김재철, 김현택, 백승권
문 화 관 광 체 육	고오주, 김두한, 류철환, 박은영, 안홍균, 이현미	김은정, 노향자, 선미영, 안남열
일 자 리 경 제	김금숙, 민은숙, 정도연, 한재동	김동찬, 김병열, 박연님, 정광임
일 반 행 정	강영옥, 추연삼	박현자, 심우섭, 윤장미
청 년	김윤아, 김태완, 김하린, 이윤미, 장은미	김아람, 남혜린, 박범진, 백형님, 정재영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지방자치법」 제47조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2011-04-01 조례 제 3926호
(일부개정) 2012-07-10 조례 제 4106호
(일부개정) 2020-07-06 조례 제 548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② “시민참여예산제도”란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에 시민참여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을 규정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는 예산편성방향, 시민참여예산의 범위,

시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있어 시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행정부시장, 제15조에 참여하는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추천을 받은 사람

3. 시장이 추천하는 시정 분야별 전문가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을 위촉할 때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시민참여예산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과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3.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4. 예산과정에 참여와 그에 따른 의견제출
5. 총회·분과위원회 개최 및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 참여
6.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8.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시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시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 분야별로 실·국 분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되 해당 실·국장은 당

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 ⑧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아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한다.

-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안
- 2.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 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사안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번 개최되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의2(총회) ① 위원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예산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총회의 결정과정에 일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시민이 총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아닌 사람이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 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이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시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의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운영 시 시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① 시장은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매년 위원회 위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시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시장은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지원 등

제24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등의 회의운영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시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등의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의2(평가) 시장은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24조의3(포상) 시장은 시민참여정책 및 우수제안 등 시민참여예산제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